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세종시 정주여건 개선 및 주택가격 상승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, 수도권에서 행복도시로 이전하는 기관 중 본사·본청을 건설하거나 취득하여 이전하는 경우만 특별공급을 허용토록 자격요건을 강화하고, 현재 여러 이전기관 특공(행복도시·혁신도시·도청이전·기업도시 등)간의 중복 당첨을 허용하고 있으나, 이를 다른 특공과 동일하게 1회로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
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서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”을 “수도권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으로 건축물 건설 또는 취득을 통해 본사·본청을 이전하는”으로, “특별공급”을 “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서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특별공급”으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제외한다.”를 “제외하며, 법령 개정 또는 국무회의 의결 등을 통해 이전하는 경우는 건설·취득을 통해 본사·본청을 이전하지 않더라도 특별공급할 수 있다”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,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2호(종전의 제3호)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 설립하는 「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」 제2조제2호”를 “「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」 제2조제2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.

1.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
3. 기업, 연구기관, 의료기관의 종사자 중 도시활성화 및 투자 촉진 등

을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하다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인정하는 자

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사업주체가 제35조제1항제12호부터 제14호까지, 제27호의2,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

제55조제1호부터 각 호 외의 부분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행복도시 예정지역 특별공급 자격요건에 관한 적용례) 개정 전 제47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대상기관이 된 경우에는 이 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 전의 규정을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7조(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 공급) ① 사업주체는 <u>행정중심 복합도시 예정지역에서 건설하 여 공급하는 주택을</u>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 주택의 기준으로 <u>특별공급</u> 할 수 있다. 다만, 2주택 이상을 소유 한 세대에 속한 자는 <u>제외한다</u> .	제47조(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 공급) ① ----- <u>수도권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으 로 건축물 건설 또는 취득을 통 해 본사·본청을 이전하는</u> --- ----- ----- <u>행정중심복합 도시 예정지역에서 건설하여 공 급하는 주택을 특별공급</u> ---. - ----- <u>제외하며,</u> <u>법령 개정 또는 국무회의 의결 등을 통해 이전하는 경우는 건 설·취득을 통해 본사·본청을 이전하지 않더라도 특별공급할 수 있다</u>
1. 「 <u>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 한 연기·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 법</u> 」에 따라 설치된 <u>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에 근무하기 위하여 이주하는 종사자</u>	1. <u>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</u>
2. <u>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으로 이전하거나 행정중심복 합도시 예정지역에 설치하는</u>	<삭 제>

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

3.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 설립하는 「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학의 교원 또는 종사자

<신 설>

4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하다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인정하는 자

가.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기업, 연구기관, 의료기관 및 국제기구의 종사자 중 도시활성

2. 「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」 제2조제2호---

3. 기업, 연구기관, 의료기관의 종사자 중 도시활성화 및 투자 촉진 등을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하다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인정하는 자

<삭 제>

화 및 투자 촉진 등을 위하
여 필요한 경우

나.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
역에 사무소를 두는 국가
기관 및 공공기관의 종사
자 중 행정중심복합도시건
설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
한 경우

② ~ ⑪ (생략)

제55조(특별공급 횟수 제한) 제35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사업주체가 제35조제1항제12호부터 제14호까지, 제27호의 2,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
우

2. 사업주체가 제35조에서 제46조까지, 제48조 및 제49조에

② ~ ⑪ (현행과 같음)

제55조(특별공급 횟수 제한) -----

. 다만, 사업주체가 제3
5조제1항제12호부터 제14호까
지, 제27호의2, 제36조제1호 및
제8호의2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
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
하다

<작 제>

<삭 제>

<u>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하여 입주(주민등록표상에 올라 있는 경우를 말한다)한 사람에게 같은 주택건설지역 외의 지역에서 제47조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</u> <u>3. 사업주체가 제47조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한 사람에게 같은 주택건설지역 외의 지역에서 같은 조에 따른 다른 특별공급 사유로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</u>	<u><삭 제></u>
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